

루이 15세와 행정군주정*

이 영 립

- | | |
|-----------------------|--------------|
| I. 머리말 | IV. 궁정정치와 파벌 |
| II. 제도사, 행정사, 새로운 정치사 | V. 맺음말 |
| III. 행정군주정의 발달과 한계 | |

I. 머리말

1743년 플뢰리가 사망하자 루이 15세는 친정을 선포했다. 1661년 마자랭의 사망 후 루이 14세의 행보를 흉내낸 것이다. 프랑스 군주정의 정치문화적 전통과 담론에 사로잡힌 그는 늘 증조부를 모방하려고 애썼다. 초상화 속에서 프랑수아 1세, 앙리 4세, 루이 14세처럼 전사왕으로 묘사되기를 즐겼고 1753년 파리 고등법원의 친립법정에서 “모든 공공질서는 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루이 15세 치세에 절대군주정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1750년대 이후 쏟아진 팸플릿에서 성적 추문에 휩싸인 루이 15세는 민중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여론의 화살은 대신독재체제에 집중되었다. 한마디로 친정 시도는 실패하고 개혁 시도는 늘 포기되었다.

역사가들은 당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 이유를 루이 15세 탓으로 돌려왔다. 우유부단한 왕과 정부의 손에 놀아난 궁정 이미지는 동시대 회고록을 참조한 19세기 역사가들에 의해 확산되고 굳어졌다. 미슐레는 루이 15세의 위무대신을 지낸 다르장송 후작(marquis d'Argenson)의 회고록을 인용하며 그의 방탕함과 정치적 무관심을 비난했다. 루이 15세에 대한 가장 혹독한 증언으로는 1758년에서 1770년까지 정부와 궁정을 지배한 슈아쉴 공작(duc de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 2009-362-A00001).

Choiseul)이 있다. 그에 의하면 “루이 15세는 네로 황제처럼 파리가 불타는 광경을 목격하고픈 유혹을 느꼈으나 그런 명령을 내릴 용기를 지니지 못했을 뿐이다.”¹⁾ 슈아쉴의 증언을 신뢰한 라비스는 루이 15세를 “역사상 가장 나쁜 왕”으로 단정지었다.²⁾ 그렇다고 해서 정반대의 증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궁정귀족 된 공작에 의하면 “왕은 10시 30분에 일어나 미사에 참석하고 통상적으로 점심때까지 참사회를 개최하며 대신들과 일했다. 점심시간은 2시이다.”³⁾ 그가 목격한 루이 15세는 적어도 행정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상징적 존재감을 부여하고 일상적인 문서에 서명하고 궁정의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전통적인 군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15세가 프랑스를 진흙탕 속에 빠뜨린 주범으로 여겨져온 이유는 무엇일까? 엇갈린 당대인들의 증언 속에서 역사가들은 왜 루이 15세에게 부정적인 증언에 무게를 실어준 것일까? 이는 프랑스혁명의 필연성과 단절성을 강조한 19세기의 목적론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시각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전통적인 구체제 정치사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던 시기는 루이 14세와 혁명 직전 시기였다. 루이 14세 치세가 16세기 이래 힘겨운 노력으로 쌓아올린 프랑스 절대주의의 결정판으로 간주되고 행정혁명을 통해 그가 이룩한 정치체제는 혁명 직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⁴⁾ 당연히 루이 15세의 치세는 역사가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으며⁵⁾ 18세기에 되풀이된 정치위기의 책임은 고스란히 루이 15세에게 되었다. 그러나 루이 14세 치세의 중앙집권화가 제한적이었다는 최근의 연구 성과는 루이 15세 치세에 대한 역사가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재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루이 14세의 절대군주정에 대한 성공 신화가 오랫동안 루이 15세, 나아가 18세기 프랑스 군주정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방해해온 것은 아닐까? 루이 14세

- 1) *Mémoires de M. Le duc de Choiseul*, chez Buisson, 1790(Kissing Publishing, 2010), p. 135.
- 2) E. Lavisse, *Histoire de France depuis les origines jusqu'à la Révolution* (Hachette, 1905-1908), t. 8, p. 354.
- 3) *Mémoires du duc de Luynes sur la Cour de Louis XV, 1735-1758*(Éd. Louis Dussieux et Eudoxe Soulié, 1860-1865), t. 5, p. 115; M. Antoine, *Le Conseil du roi sous le règne de Louis XV*(Genève: Droz, 1970), p. 611에서 재인용.
- 4) M. Antoine, *Le Conseil du roi*, p. 77.
- 5) 예를 들어 라비스는 *Histoire de la France*에서 전체 9권 중 2권(7권과 8권)을 루이 14세 시대에 할애한 반면 루이 15세 시대는 8권의 2부에서 간략하게 다루었을 뿐이다.

가 국가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루이 15세의 정치적 무능력이 과장된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루이 15세의 군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의도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위기가 반복된 루이 15세 치세를 정부 구조와 운영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도사, 행정사, 새로운 정치사

행정기구의 구축은 중세 이래 장기적인 역사의 산물이다. 더구나 구체제 하에서 제도는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폐지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 앙리 2세 치세 이래 프랑스 군주들은 참사회를 중심으로 대상서, 4명의 국무비서, 재무총관의 보좌를 받았다.⁶⁾ 참사회와 6개 부서로 이루어진 정부의 기본 골격은 1665년 루이 14세 의해 재무총관이 재무총감으로 바뀌었을 뿐 1791년 4월 27일 혁명정부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구체제 제도사는 이 시기를 연속적으로 다루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도 않았다. 19세기 중엽 이후 광범위하게 진행된 공식문서 수집과 정리, 출판에 힘입어 제도사 연구가 활기를 띠었으나 각 군주 치세의 법령집이나 공문서 등 사료집을 묶어내거나 제도를 일괄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⁷⁾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사료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구체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고문서는 매우 부족한 편이며 사적으로 보관되어온 대신들의 문서는 상당부분 유실되었다.⁸⁾ 그러나 전통적인 제

6) 4명의 국무비서가 등장한 것은 1547년 앙리 2세의 lettre patente를 통해서이다. 초기에 4명의 국무비서는 지리적으로 구분된 4개의 지역을 관할했으나 점차 궁내부, 외무, 육군, 해군 등 기능적으로 구분된 4개 부서를 담당했다.

7) M. Antoine, "Les Institutions françaises du XVI^e au XVIII^e siècle. Perspectives de recherche", *Journal des Savants*, No. 1(1976), pp. 65-68.

8) 국왕포고문, 사법문서, 날장으로 된 칙령, 세금 징수 관련 서류 등 공문서가 가장 풍성하게 남아 있는 시기는 16세기 전반기이다. 반면 종교내전과 반란으로 얼룩진 16세기 후반에서 1661년까지는 공문서의 보존이 가장 불완전한 시기이다. 18세기에도 보조세 법원과 회계법원의 문서가 불타고 1871년 재무성과 회계법원의 화재로 인해 세금 징수에 관련된 사법문서와 국왕 포고문 등 많은 공문서가 유실되었다. 그러나 공문서가 불완전한 더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공문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에

도사 연구의 치명적인 한계는 무엇보다도 국왕 입법문서와 행정명령문서를 실제 관행으로 간주한 데서 기인한다. 제도는 법이나 왕의 명령을 통해 태어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설득과 독려를 위한 수단이자 수사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19세기의 제도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역사가 아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제도사는 제도의 발생이나 실행 과정에 내포된 복잡다단한 실체를 포착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한 채 절대군주정의 역사를 미화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전통적인 제도사에 대한 도전은 정치사 자체가 역사에서 외면당하면서 오랫동안 지연되었다. 19세기 역사학의 세기에 외교사와 더불어 역사학의 권좌를 지켰던 제도사는 20세기에 계급의 역사, 사회경제사에 밀려 사전류 속에서 명맥을 이었다.⁹⁾ 이 점에서 방대한 연구 성과를 쌓은 근대사가 앙투안은 사뭇 예외적이다. 국립고문서보관소 연구원 출신인 그는 구체제 제도의 조직과 작동 과정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분석했다. 그 덕분에 전통적인 제도사는 행정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¹⁰⁾ 그러나 구체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역사가들의 주목에 받게 된 것은 사회사 연구가 축적되면서부터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 재정 자체의 규모와 지출뿐 아니라 재정 충당의 역할을 맡은 재정가들의 대부 방식과 과정,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그들의 인적

있다. 14세기 초 필리프 4세가 Trésor des Chartres를 설립하면서 왕실문서가 보관되기 시작했지만 국가의 공문서를 보관한다기보다는 왕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관하려는 것이었고 종종 왕의 측근과 고위 관리들이 공문서를 사적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1631년 리슐리외가 루브르에 행정문서 보관소를 설치하고 대신들의 사후 공문서 압수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실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88년 육군, 1699년 해군, 1710년 외교문서들이 분리, 보관되기 시작하고 1716년에는 재정문서 보관소가 베르사유 성 안에 세워졌다. 이렇듯 중앙에 공문서가 세워진 유럽의 다른 나라들(1567년에 세워진 에스파냐의 Simancas, 1578년 영국의 the State Papers Office, 1610년 로마의 Archives vatican, 1749년 비엔나의 Hofund Staatsarchiv)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공문서보관소가 산발적으로 세워졌다. 1789년 혁명 당시 군주정 전체에 약 70개의 공문서보관소가 존재했다. 최초로 중앙집권화된 국가 공문서보관소가 세워진 것은 혁명 이후이며 이것이 오늘날의 국립 고문서보관소(Archives Nationales)이다: B. Barbiche, *Les Institutions de la monarchie française à l'époque moderne*(PUF, 2001), pp. 128-131.

9) F. Bluche, *Dictionnaire généalogique*(Hachette, 1956); M. Marion, *Dictionnaire des institutions de la France aux XVII^e et XVIII^e siècles*(Editions A. & J. Picard & C^{ie}, 1923).

10) M. Antoine, "Les Institutions françaises", p. 66.

그물망을 분석한 재정사 연구를 통해 제도와 사회의 관계가 드러났다.¹¹⁾ 이렇듯 제도 그 자체에 국한된 19세기의 제도사와는 달리 제도를 움직인 사람들과 사회 집단, 그들의 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춘 제도사는 행정사라는 명칭에 걸맞게 그 내용도 달라졌다.¹²⁾ 정부조직뿐 아니라 그 구성 집단의 사회적 범주,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와 운영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루이 14세의 중앙집권화가 사실상 전국에 파견된 지사들과 지방토착 세력의 담합의 산물임을 밝혀낸 일련의 연구는 그러한 맥락에서 얻어진 성과였다.¹³⁾

새로운 루이 14세 연구는 그의 신화를 깨뜨리는 다양한 연구를 자극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치사 연구의 방향키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먼저 구체제 정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져온 루이 14세 치세가 재평가되면서 그 이전과 이후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프랑스 정치사를 바라보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 그와 더불어 오랫동안 공백상태나 다름없던 루이 15세 치세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둘째 정부 운영의 한계가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시각이 정치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면서 이전에는 정치사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적 조직망과 관계방정식의 틀을 통해 권력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분석하려는 정치사회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루이 15세와 궁정귀족들의 사치와 방탕놀음의 공간으로만 여겨져온 18세기 궁정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사 연구는 궁정사회 내부의 움직임과 정부의 복잡한 관계망에 주목한다.¹⁴⁾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 의하면 정부조직과 제도의 운영은 그것을 움직인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제의 독특한 정치구조와 관행상 루이 15세 시대에도 루이 14세 군

11) F. Bayard, *Le Monde des financiers au XVII^e siècle*(Flammarion, 1988); J. Dent, *Crisis in France: Crown, Financiers and Society in 17th century France* (Newton Abbot, 1973); D. Dessert, *Argent, pouvoir et société au Grand Siècle*(Fayard, 1984).

12) M. Antoine, "Les Institutions françaises", p. 72.

13) F. X. Emmanuelle, *Un mythe de l'absolutisme bourbonien, l'intendance du milieu du XVII^e siècle à la fin du XVIII^e siècle*(Publications de l'Université de Provence, 1981); W. Beik, *Absolutism and Society in Seventeenth Century France: State Power and Provincial Aristocracy in Languedoc*(Cambridge Univ. Press, 1985).

14) P. R. Campbell, *Power and Politics in Old Regime France, 1720-1745*(London: Routledge, 1996); B. Hours, *Louis XV et sa cour*(PUF, 2002).

주정의 기본틀이 유지되었지만 실제 운영방식과 그로 인한 정치현실은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루이 14세의 정치체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전제 하에 정치위기를 루이 15세 개인의 탓으로 돌려온 기존의 연구는 지나치게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 이 글이 루이 15세의 군주정을 궁정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재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III. 행정군주정의 발달과 한계

1. 행정조직의 세분화와 전문화

1715년 루이 14세의 사망 후 오를레앙 공작은 파리 고등법원과 타협함으로써 섭정으로서의 지위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¹⁵⁾ 그는 대귀족들을 다루는 데도 능숙한 솜씨를 보였다. 7개의 새로운 참사회를 만들어 귀족들에게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른바 다원합의제(polysynodie)로 알려진 집단체제가 실험되었다. 그러나 육군, 해군, 재무, 외교, 국내, 교역, 성무참사회는 실질적인 행정기구가 아니라 섭정이 주재하는 섭정참사회를 위한 논의와 보고기구였으며 섭정참사회의 감독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정부에 적대적이던 대귀족 세력을 포섭하는 한편 국무비서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내부 분열로 곧 쇠퇴했지만 17세기 이래 정치적 권한의 회복을 꿈꾸며 삼부회 소집을 요구하던 귀족 세력을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결국 다원합의제는 짧은 막간극처럼 단명하고 1718년 섭정은 과거체제로의 복귀를 선언했다.¹⁶⁾

여기서 과거체제라 함은 16세기 이래 유지되어온 참사회체제를 뜻한다. 왕은 늘 참사회를 두고 자문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참사회의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참사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로 왕의 요구를 통해서만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제 하에서 행정문서는 대부분 "참사회에서 왕에 의해 이루어진" 판결문(arrêt)의 형식을 취했다.¹⁷⁾ 참사회가 정책결정과

15) 이영림, 「정치적 타협과 저항: 파리 고등법원의 역사」, 『프랑스사 연구』 제23집(2010), pp. 174-180 참조.

16) P. R. Campbell, *Power and Politics*, pp. 51-68.

17) R. Mousnier,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sous la monarchie absolue, 1598-*

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참사회의 구조와 행정적 성격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1661년 루이 14세의 친정과 더불어서이다. 대외관계와 군사문제를 다룬 고등참사회(conseil d'un haut)¹⁸⁾, 국내문제를 전담하는 국왕재무참사회(conseil royal des finances)와 공문서참사회(conseil des dépêches)가 왕이 참석하 가운데 국사의 주요 사안이 논의되고 결정되던 핵심 기구였다. 그러나 루이 14세는 사실상 콜베르나 루부아 등 국무비서들과 개별적으로 주요문제를 결정했다.¹⁹⁾ 섭정기를 지나 루이 15세 시대에는 적어도 외형상 참사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원칙적으로 루이 15세는 일주일에 5일 일했다. 수요일과 일요일에 국무참사회가 매주 2번씩 정기적으로 소집되었다. 공문서참사회는 토요일, 재무참사회와 1730년 부활한 교역참사회(conseil de Commerce)는 화요일에 번갈아가면서 열렸다.²⁰⁾ 목요일에는 성무참사회(conseil de conscience)가 열렸다. 그 외에도 법적, 종교적, 경제적 사법문제를 다루는 계쟁참사회(conseil des parties)와 추밀참사회(conseil privé) 등 다양한 참사회가 존재했으나 왕이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²¹⁾ 그리고 참사회의 하부조직으로 루이 14세 시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다양한 사무국들(Bureaux)과 협의회들(Commissions)들이 늘어나고 체계화되었다.²²⁾ 참사회를 에워싸고 있던 이러한 기구들은 주로 대상서나 재무총감, 국무비서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명목상 왕을 보좌하는 참사회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왕 참사회란 넓은 의미에서 참사들과 사무국들, 그리고 담당관들을 통해 기능하던 복합적인 참사회체제를 일컫는 집합적 용어이다.²³⁾

1789(PUF, 1980), t. 2, p. 164.

- 18) 1643년 이후 고등참사회로 불리던 이 참사회는 루이 14세 치세 말기에 국무참사회(conseil d'Etat)로 명칭이 바뀌었다.
- 19) 이영림, 『루이 14세는 없다』(푸른 역사, 2009), pp. 93-96; 임승휘, 『프랑스 절대왕정의 권력과 행정구조』, 『프랑스 구체제의 권력구조와 사회』(한성대 출판부, 2009), pp. 39-68 참조.
- 20) D. K. Smith, "Structuring Politics in Early 18th Century France: The Political Innovations of the French Conseil of Commerce", *Journal of Modern History*, No. 1(2002), pp. 232-254.
- 21) 루이 15세는 고등법원과 날카롭게 대립하던 1762년 3월과 1766년 12월 두차례 추밀참사회에 참석했을 뿐이다(M. Antoine, *Le Conseil du roi*, p. 140).
- 22) 상설기구인 사무국은 국무참사들만으로 구성된 반면 임시기구인 협의회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국무참사들로 구성되었다(*Ibid.*, p. 162).
- 23) *Ibid.*, pp. 118-175.

참사회의 구성원은 왕이 의견을 구한다는 의미를 지닌 국왕참사(conseiller du roi)들이다. 그들은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매우 다양했지만 대체로 두 부류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부류는 왕의 부름을 받은 성직자, 군인, 외교관들이다. 또 다른 부류는 고위 관직자들로 수석대신, 대상서, 국무비서, 재무총감, 재무지사(구역별 6명), 국무참사(conseiller d'Etat)²⁴⁾, 청원심사관(maître des requêtes)들이다.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지닌 이 두 번째 부류야말로 참사회체제의 골격을 형성한 전문가 집단이다.

그런데 루이 15세 시대에 국무참사회와 공문서참사회가 왕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모이는 새로운 관례가 생겼다. 왕의 출석 이전에 의견 조율 혹은 결정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소집된 이 비공식 모임은 대신위원회(comité des ministres)라 불렸다. 루이 15세의 유년시절에 나타난 이러한 관례는 플뢰리 시대에 빈번해져 1737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이어지고 1747년부터는 공식적인 회합으로 정착했다. 앙투안은 이러한 과정에서 참사회가 왕의 대리기구로서 역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8세기에 참사회는 전반적으로 정책 결정기구보다는 논의기구에 가까운 성격을 띠며 그 권한이 약화되었다. 특히 1726년 이후 실권을 장악한 플뢰리가 섭정의 평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전쟁문제를 전담하던 국무참사회는 정치적 우월성을 상실했다. 플뢰리가 안센주의 문제를 전담하면서 성무참사회도 사라졌다. 반면 공문서 참사회와 대상서의 주재 하에 법적이고 전문적인 소송문제를 다루는 계쟁참사회와 추밀참사회의 기능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대목은 루이 14세 시대에 약화되었던 대상서가 다시 권위를 회복하게 된 점이다. 루이 15세 초기부터 불거진 안센주의

- 24) 구체제 하에서 국왕참사(conseiller du roi)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선 일반 명사처럼 고위 관리, 법관들, 총독, 궁정관료, 군사령관, 심지어 고등법원 법관들과 청원심사관들, 주교들에게 붙여졌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국무참사는 정부 구성원으로서의 참사를 가리키며 정식 직함은 conseiller du roi en ses Conseils d'Etat et privé이다: L. Bély, *Dictionnaire de l'Ancien Régime*(PUF, 1996), pp. 320-321. 앙리 3세 시대인 1578년 24명으로 출발한 국무참사는 계속 늘어났으나 1673년 30명으로 제한되고 루이 15세 치세에 42명, 1787년 32명으로 바뀌었으며 구성원도 변화했다. 앙리 3세 치세에는 성직자와 대귀족들이 많았으나 앙리 4세 시대부터 청원심사관들과 최고 법원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1673년에는 30명 중 성직자 3명, 검거족 3명, 법복귀족 24명으로 고정되었다: B. Barbiche, *Les Institutions de la monarchie française*, pp. 279-284.

문제로 인해 고등법원과의 치열한 공방과 다툼이 계속되면서 그러한 현상은 점차 일반화되었다.²⁵⁾ 실제로 다게소(D'Aguesseau), 라무아농(Lamoignon), 모푸(Maupeou)로 이어지는 대상서들은 18세기 내내 고등법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적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다. 특히 1750년 이후 다양한 종류의 출판물이 쏟아지면서 출판물의 감독을 전담한 대상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루이 15세 시대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존재는 재무총감이다. 재무총감은 세금징수만이 아니라 화폐의 유통과 조달에 관련된 치안문제, 재무관련 소송(재무지사 관할)까지 장악하며 사실상 국내문제를 총괄했다. 로(Law)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징세청부제에 의존한 과거의 재정체계의 회복기를 시급한 과제로 삼은 플리리의 치세에 재무총감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다. 재무총감의 보고로 진행된 재무참사회는 원칙상 2주에 한번 소집되었으나 1720년대에는 매년 50회 이상 열렸다. 그러나 1730년대에 소집간격이 뜸해져 1736년에는 28회로 줄어들더니 1750년대에 재무참사회의 위력은 일종의 신화처럼 여겨졌다.²⁶⁾ 교역참사회도 곧 후퇴했다. 대신 1722년에 설립된 교역사무국(Bureau du Commerce)²⁷⁾이 그 역할을 했다. 재무총감의 주도 하에 해군국무비서, 국무참사, 청원심사관, 교역지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기구는 신속한 논의와 결정을 통해 식민지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밖에도 재무총감, 국무참사, 청원심사관 등을 핵심 구성원으로 한 다양한 사무국들과 협의회들이 독립적인 전문행정기구로 발전했다. 특히 재정국(Bureau des finances)에서는 지방에 파견된 지사들을 통해 전국의 정보가 보고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²⁸⁾ 1750년대에 매

25) O. Hintze, "The Origins of the Modern Ministerial System: A Comparative History", F. Gilbert (ed.),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e*(Oxford Univ.Press, 1975), pp. 231-235.

26) R. Mousnier,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t. 2, p. 167.

27) Bureau de Commerce는 국무참사들이 교역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며 'tenir bureau'라고 언급한 데서 유래했다. 참사회를 보좌하던 하위기구를 가리키는 이 단어는 당시 commission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M. Antoine, *Le Conseil du roi*, p. 151.

28) 국가행정을 조직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이다. 루이 14세 친정 이후 지방의 저항세력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체계화된 인구 조사사업은 루이 15세 시대에 경제,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전문화되고 정규화되었다. 특히

년 4000여개의 행정명령문들(arrêts)들이 전국에 발송되었는데 그중 2/3가 재정에 관련된 것들로 대부분 재정국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다.²⁹⁾ 이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전국의 물적 자원에 대한 보고와 논의, 정책결정이 재무총감에게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재무총감은 다른 고위 관직자들과는 달리 파리에 거주하며 수납총관, 총괄징세청부업자, 회계총감 등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매주 수납총관협의회(commision des receveurs généraux)를 개최했다.

재무총감의 주변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재무지사들과 교역지사들이 포진해 있었으며 그의 측근에서 세분화된 업무를 담당한 수석사무관(premier commis)과 사무국³⁰⁾의 수도 꾸준히 늘어났다. 16세기 초 이후 국무비서 주변에서 일하던 서기에서 유래한 수석사무관은 각각 1명의 주임사무관, 2명의 사무관과 1명의 서기를 두었는데 재무총감은 1762년에 그런 수석사무관을 5명, 1772년에는 8명을 두었다. 그밖에 재무지사들 수하의 개별 수석사무관과 6개 사무국의 수석사무관을 포함해서 재무총감은 모두 32명의 수석사무관을 지휘했다. 이에 비해 1759년 육군비서는 13명, 해군비서는 1748년 8명(비서실과 7개의 사무국), 외무비서는 6명의 수석사무관(6개의 사무국)을 두었을 뿐이다. 이렇듯 재무부서의 규모는 다른 부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청원심사관과 국왕비서 등을 포함해서 350명의 사법 담당인원을 총괄하던 대상서를 제외하면, 1750년 총 600여명에 달하는 행정인원 전체에서 160여명을 지휘한 재무총감이야말로 행정군주정의 중추였던 셈이다.³¹⁾

재무총감이 파리에 거주한³²⁾ 반면 다른 행정조직은 베르사유 궁전 입구 왼쪽에 위치한 대신들의 익랑건물에 자리잡았다. 국무비서들의 집무실은 1층에 있었고 2층은 수석사무관들이 사용했으며 3층에는 사무국이 있었다. 참사

1730년 재무총감 오리가 시도한 농업, 제조업, 상업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계기로 전국에 대한 물적 자원에 관한 정보 수집은 영구적인 체제로 자리 잡으며 구체적인 성과가 축적되었다: B. Barbiche, *Les Institutions de la monarchie française*, pp. 135-141.

29) R. Mousnier,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t. 2, p. 169.

30) 여기서의 bureau des commis는 Bureau de Commerce와 구분된다.

31) 당시 각각의 지사들에 속한 인원은 약 10-15명에 불과한 반면 징세청부 사무실에는 약 3만명의 사무원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32) 재무총감의 수석사무관은 5명 중 1명만 베르사유에 있고 4명은 각각 파리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일했으며 재무지사들의 수석사무관들 역시 모두 파리에 사무실을 두었다.

회의실이 여전히 궁전 내부에 머물러 있던 것과는 달리, 4명의 국무비서를 위시한 관료집단이 독자적인 집무실을 차지함으로써 공적 업무 공간을 확보했음은 관료제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무국은 업무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 전문 부서였다. 그와 더불어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관료집단(bureaucrate)과 관료제(bureaucratie)라는 단어가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루이 15세 치세는 행정군주정의 절정기로 간주될 만하다. 그때부터 행정에 관한 용어가 만들어지고 오늘날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선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정치구역 혹은 통치자의 행위를 의미하던 'gouvernement'이라는 단어에 '대신들의 집합체'이자 '국가의 최고집행부'로서 정부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대신이라는 단어가 정부의 고위직 구성원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이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의 대신은 루이 13세 시대 이래 고등참사회의 구성원을 지칭하던 국무대신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³³⁾

2. 행정적 후견제

이렇듯 제도적 틀을 갖춘 루이 15세 정부는 효율성을 발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을까? 루이 15세 치세의 제도적 발전을 인정한 앙투안은 국무참사들이 매직관리가 아니라 임명직 관리였음을 강조하며 국왕과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 전문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집단정신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높이 평가했다.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수석사무관들과 사무관들 역시 매직관리가 아니었으며 봉급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관료의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1750년 이후 가시화된 정치위기와 민중의 불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앙투안은 그 이유를 왕의 무능력으로 돌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루이 15세 정부가 이전보다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관료조직을 갖추었으며 이론상 왕이 그 모든 기구의 꼭대기에 위치했음은 분명하다.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역사가들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뮈공작과 크로이 공작의 증언에 의하면 루이 15세가 집무실의 서류더미 속에 파묻혀 지낸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왕의 직인이 찍힌 채 전국에 전파된 국왕특허장, 칙령, 왕령, 국왕포고문, 국왕인증서, 국왕판결문 등 무수한 공문서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왕에 의

33) B. Barbiche, *Les Institutions de la monarchie française*, p. 119.

해 직접 검토되지도 참사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³⁴⁾ 구체제 하에서 정부의 모든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국왕의 문서이다. 따라서 어떤 관직자 명의의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왕은 왕국 전체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책임을 진 상태였지만 정작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18세기에 번영과 식민교역의 발달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그럴수록 정책결정과정은 불분명해졌다. 왕의 신임을 무기로 대신위원회를 주도한 플리리 치세를 거치며 왕의 부재와 참사회의 허구성은 가속화되었다. 왕은 점점 더 운신이 어려워졌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법과 권위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믿었던 왕은 1743년에 친정을 선포하고 1751년 이후 빈번하게 개최된 친립법정에서 절대군주권을 천명했다. 그러나 프랑스 군주정은 절대군주정의 전통적인 틀에서 서서히 이탈해갔다. 1750년 이후 정책결정과 시행을 독점한 대신들, 특히 재무총감과 재무지사들의 독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친 것을 보면 여론도 이러한 변화를 날카롭게 감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영국에서는 의회의 발달을 통해 군주권이 약화된 것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행정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군주권이 손상되었던 것이다.³⁵⁾

그러나 복잡한 행정기구의 구조적 문제보다 더 왕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은 관직을 통해 작용한 사회적 압력이었다. 모든 사안에 관한 논의와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관료체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내에 존재하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비공식적이고 인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행정운영의 이중성은 물론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미 17세기 후반 이후 정부의 고위직은 관직을 통해 귀족의 대열에 합세한 이른바 법복귀족들에 독점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사적 조직망이 구축되었다. 특히 육군비서직을 제외한 정부내 요직을 독점한 콜베르와 그의 친족으로 구성된 족벌체제를 거치며 혈연에 기반한 사적 유대관계는 더욱 긴밀하고 끈끈해졌다. 콜베르 사후 르텔리에(LeTellier), 풍샤르트렝(Pontchartrin), 다게소, 라무아냥, 다르장송 등의 법복귀족 가문들은 경쟁적으로 국무비서와 재무총감, 대상서직을 독점하며 행정귀족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고 도처에

34) R. Mousnier,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t. 2, p. 164.

35) J. D. Seigle, *The Impact of Bureaucratization in France: Solidarity and Differentiation in the Royal Administra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Univ. of Chicago, 1973), p. 254.

자신들의 수하를 심었다. 그중에서도 관직의 인식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풍샤르트랭의 가문이다. 1689년 재무총감, 1690년 궁내부 대신을 거쳐 1699년 대상서직에 오른 풍샤르트랭의 가문은 이후 5명의 궁내부 대신직을 배출하며 루이 14세 치세 말기부터 루이 15세 치세 내내 그 자리를 독점했다. 풍샤르트랭, 펠리포(Phélypeaux), 모르파(Maurepas)로 이어진 가문의 구성원들은 관리라기보다는 그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³⁶⁾

한 마디로 행정군주정을 움직인 것은 결혼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복잡하게 얽힌 사적 조직망이었다. 16세기 이후 사회에 만연한 인신적 관계를 지탱하던 후견 조직망과 똑같은 원리와 관행이 18세기에도 유지되고 정부의 수직적인 관료조직과 결합하면서 더욱 위계적인 행정적 후견제로 굳어졌던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14세기부터 유래한 관직매매이다. 17세기에 절정에 달한 관직매매는 루이 14세 치세 말에 쇠퇴하기 시작해서 섭정기에 잠시 주춤했으나 18세기에도 성행했다. 폴란드왕위계승전쟁이 시작되자 재무총감 오리(Orry)는 관직이 이미 포화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733년 파리의 시행정관직을 관직매매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칙령을 공포했다.³⁷⁾ 관직매매는 18세기에도 여전히 전쟁자금을 충당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다. 18세기의 관직매매를 연구한 도일에 의하면 중앙정부뿐 아니라 도시와 지방의 사법, 재정, 행정관직을 포함한 매관직은 1778년 약 7만개로 추산된다. 이는 당시 성인 남자 1%에 해당된다.³⁸⁾

앙투안의 주장처럼 국무참사뿐 아니라 재무총감과 국무비서들, 지사들 역시 매직관리가 아니라 임명직 관리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대부분 매직관리인 청원심사관 출신이었으며 이전의 매관직을 보유한 이중적

36) C. Frostin, "Le Chancelier de France, Louis de Ponchartrain, ses premiers présidents, et la discipline des cours souveraines", *Cahiers d'histoire*, No. 1(1982), pp. 9-34; L. Boisnard, *Les Phélypeaux. Une famille de ministres sous l'Ancien Régime* (PUF, 1986) 참조.

37) W. Doyle, *Vendality: the Sale of Offices in 18th century France*(Oxford, 1996), pp. 220-222.

38) 1664년 당시 콜베르의 조사에 의해 45,780개로 추산된 관직수는 1778년 50,969개로 늘었다. 그러나 도일에 의하면 이 수치는 재정관직과 사법관직만을 포함한 것으로 궁내부 관직과 1730년에 거래된 파리의 관직 3000개, 그리고 항구의 관리직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7만 개는 이 모두를 합한 수치이다(*Ibid.*, p. 5).

신분 상태를 유지했다. 직위증서(brevet de retenue)를 구입해야 했던 국무비서들도 사실상 매직관리들이나 다름없었다.³⁹⁾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행정 인력이었던 수석사무관과 사무관들은 매직관리가 아니었지만 관직매매의 그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들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충원된 것이 아니라 국무비서의 사적인 연고나 추천을 통해 관직을 얻었기 때문이다. 임용과 승진을 무기로 충성을 요구한 국무비서들을 중심으로 수석사무관과 사무관들이 집결하면서 인신적인 권력의 사닥다리가 형성되었다. 결국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정부 전체가 관직매매의 그물망으로 뒤덮이고 대신들의 익랑 건물에서는 관료제와 후견제가 동시에 작동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루이 15세의 행정군주정은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의 이념형과는 거리가 멀다.⁴⁰⁾

이러한 행정적 후견조직망은 정부 내에 국한되지 않았다. 지사, 대상서, 재무총감과 같은 고위 관직자의 선택은 왕이 거주하는 궁정에서 이루어졌기에 법과 제도를 넘어선 행정적 후견조직망은 궁극적으로 권력의 요체인 궁정에 닿아 있었다. 따라서 궁정에 대한 이해 없이는 구체제의 정치와 체제 갈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IV. 궁정정치와 파벌

1. 파벌의 형성

역사가들은 흔히 궁정이 정치의 핵심이었음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베르사유는 절대군주권을 과시하는 정치적 무대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를 움직이는 권력의 막후 공작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사회였다는 사실이다.

왕의 거처인 궁정은 외형상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사회적 공간이다.

39) 이 증서를 구입하기 위해 국무비서는 50만-90만 리브르를 납부해야 했다. 사임할 때에는 국가가 이 액수를 환불해주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가 지불해야 했기에 사실상 국무비서직은 기존의 가문에 의해 세습되었다: B. Barbiche, *Les institutions de la monarchie française*, pp. 173-181.

40) 베버는 근대적 관료제의 특성으로 공식화된 일 처리 방식, 명확하게 설정된 임무, 명확한 계서제, 고유한 자의식 등을 갖춘 관료집단의 존재, 공개경쟁을 통한 충원, 적절한 사전 교육이나 훈련, 정기적인 봉급과 은퇴 후의 연금 등을 꼽았다.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박성환 옮김(문학과 지성사, 1997), pp. 418-426.

그러나 궁정은 사실상 상호이익체제였다. 왕은 무대의 관중만이 아니라 피후견조직망을 필요로 했고 귀족들은 명예와 사회적 특권의 유지를 위해 권위와 부의 분배자인 왕의 주변에서 경쟁을 벌였다. 파벌은 그러한 귀족들의 경쟁 속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며 번져갔다. 궁정에서 파벌을 형성한 귀족들의 사회적 영역은 대신들의 정치적 영역과는 별개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영역은 사실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7세기 후반 이후 광범위하게 전개된 범부귀족과 검귀족의 결혼과 사적 이해관계의 공유를 통해 대신들은 파벌에 깊숙이 연루되고 정치와 행정은 복잡하게 뒤엉켰다.⁴¹⁾

파벌은 표면적으로는 사적 관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후견조직망과 유사하다. 그러나 파벌의 관심사는 궁극적으로 정치에 있었다. 따라서 파벌은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실가족과 궁정귀족뿐 아니라 대상서나 대신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리들이 포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적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관직 임명과 정책 결정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민하고 복잡하게 움직였다.

궁정파벌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그러나 프랑스 정치사에서 루이 15세 치세처럼 궁정사회 전체가 파벌 다툼에 휩싸이고 파벌이 권력을 움직이는 매개장치 역할을 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루이 15세의 궁정이 파벌들 간의 격전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을 찾으려면 루이 14세의 사회 지배전략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프롱드난의 진압 후 루이 14세는 잠재적인 반란 세력인 귀족들을 궁정으로 끌어들이고 다음 귀족들의 후견조직망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으로 재구성했다. 엄격하게 차별화된 궁정예절은 귀족들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사회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궁정에서의 모든 일상 생활은 정교한 에티켓으로 위계화되고 귀족들은 왕의 충애를 얻기 위해 사소한 에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루이 14세가 대귀족들을 궁정 안으로 끌어들이고 경쟁심을 자극함으로써 파벌의 인적, 심리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루이 15세의 섭정 오를레앙 공작은 귀족에게 정치 무대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파벌 형성의 계기를 제공했다. 가장 먼저 파벌을 형성한 집단은 루이 14세 치세 동안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대신 내부적인 결혼을 통해 결속력을 다진 오를레앙,

41) 이영림, 『프랑스 구체제 귀족: 몰락인가 변신인가』, 『역사학보』 194집(2007), pp. 306-307.

콩데, 콩티 등 방계왕족들이다. 오를레앙 공작의 사망 후 콩데 가의 부르봉 공작이 수석대신이 되었으나 곧 플뢰리에게 밀려나자 방계왕족들이 정치적 권한의 회복을 꾀하며 함께 뭉쳤던 것이다.⁴²⁾ 여기에 노아유 원수(maréchal de Noailles), 위셀 원수(maréchal de Huxelles) 등 전통귀족이자 전사집단으로서의 우월감과 사명감에 사로잡힌 구귀족들이 합세했다. 범부귀족 모르파는 궁정과 정부를 연결시켜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며 정치적 야심을 키웠다. 풍샤르트랭의 손자로 17세인 1718년에 아버지로부터 궁내부 대신직을 물려받고 1723년부터 해군대신직마저 겸하며 일찍부터 궁정정치에 익숙해진 그가 “가장 유능하게 해낸 역할은 궁정을 지배한 것이었다.”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뢰리 치세에 궁정 파벌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루이 14세의 유언으로 루이 15세의 시강학사가 된 플뢰리는 수석대신으로 불린 적이 없지만 1726년부터 17년간 리슐리외, 마자랭처럼 전권을 행사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수석대신 아닌 수석대신의 역할을 한 콜베르와 유사하다.⁴⁴⁾ 궁정에서 고도의 정치적 게임을 통해 권력의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한 그는 외무대신 쇼블랭(Chauvelin), 재무총감 오리, 대상서 다게소의 충성을 기반으로 정부를 장악했으나 정작 궁정과는 거리를 두었다.⁴⁵⁾ 이는 플뢰리 치세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여러 비결들 중 하나였음에 틀림없다. 플뢰리의 사후 궁정에서는 파벌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루이 15세의 궁정을 묘사한 뤼 공작과 크로이 공작, 다르장송 후작과 같은 회고록 저자들은 한결같이 1740년대에 펼쳐지기 시작한 귀족들 간의 파벌 다툼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⁴⁶⁾ 그 중 역사가들에 의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다르장송 후작의 회고록이다. 뤼 공작과 크로이 공작이 궁정귀족들의 연금 청탁이나 대부 알선, 정략결혼 등의 사적인 문제에 치중한 반면,

42) P. R. Campbell, *Power and Politics*, p. 164.

43) *Mémoires et journal inédit du marquis D'Argenson,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sous Louis XV*, E. Thunot et Cie, 1857-58(Nebu press, 2011), p. 213.

44) 루이 15세와 마찬가지로 플뢰리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왕의 환심을 산 교활한 늙은 시강학사의 이미지에 가려져온 그를 역사적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가 나타난 것은 지극히 최근이다. G. Chaussinand-Nogaret, *Le Cardinal de Fleury: Richelieu de Louis XV*(Payot, 2002) 참조.

45) C. Jones, *The Great Nation France from Louis XV to Napoléon*(Penguin Books, 2002), p. 121.

46) *Mémoires du duc de Luynes; duc de Croÿ, Journal inédit*(Flammarion, 1906-7).

다르장송은 궁정사회의 권력 게임과 구체적인 사건에서 전개되는 파벌들의 관계방정식을 주시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흔히 생시몽과 비교된다.⁴⁷⁾ 그러나 궁정사회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두 사람 모두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점은 유사하지만 생시몽이 세밀한 인물묘사와 심리분석에서 탁월한 솜씨를 발휘했다면, 1744년부터 3년간 외무대신으로 권력에 근접했던 경험을 지닌 다르장송의 회고록은 구체적인 정치적 사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치에 대한 비판도 사뭇 냉철하며 분석적이다.⁴⁸⁾

다르장송은 지사와 국무참사를 거쳐 외무대신이 된 전형적인 법복귀족이다. 그러한 경력보다 그의 회고록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그가 치안총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1697년에서 1718년까지 21년간 궁정과 파리의 모든 정보를 독점한 아버지 덕분에 그는 일찍부터 정부와 궁정의 문제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는 습관을 지녔다. 그가 궁정사회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파벌이다. 이런 맥락에서 1745년은 그에게 의미심장한 해이다. 그때부터 광범위한, 그러나 다소 느슨한 방계왕족의 파벌에 지배되던 궁정에서 파벌의 대립 구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해 풍파두르 부인이 왕의 공식 정부가 되고 그녀를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다르장송에 의하면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변화는 재정가이자 왕실 납품업자인 파리스 형제⁴⁹⁾의 등장이다. 총괄징세청부업자의 딸인 풍파두르 부인을 통해 궁정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그들은 국가 재정을 좌지우지했을 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 대신들의 임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악한 ‘조물주들’이다. 다르장송은 풍파두르 부인의 파벌을 형성한 추동력이 그녀에 대한 루이 15세의 총애보다는 파리스 형제의 재정능력에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풍파두르 부인의 측근으로 분류된 뷔지와 후작(marquis de Puisieulx), 탕생 추기경(cardinal de Tencin), 삭수 원수(maréchal de Saxe)도 파리스의 시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풍파두르

47) 생시몽, 『루이 14세와 베르사유 궁정』, 이영림 옮김(나남, 2009) 참조.

48) 쇼시낭 노가레는 다르장송의 『회고록』을 18세기 정치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했다(G. Chaussinand-Nogaret, *Le Citoyen des Lumières*(Bruxelles: Editions Complexe, 1994), pp. 41-67.

49) 파리스 형제 4명 중 여기서는 주로 Pâris de Montmartrel을 가리킨다. 풍파두르 부인의 대부인 그는 국고상서(garde du Trésor)로 궁정과 정부의 최대 전주 역할을 했다.

부인, 파리스 형제, 삭수 원수로 대표되는 또 하나의 파벌이 형성되었다.

그와 동시에 궁정에서는 풍파두르 부인의 파벌을 견제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때도 모르파가 중간 역할을 했다. “모르파는 세자로 하여금 왕의 정부와 전쟁을 벌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⁵⁰⁾ 그러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왕비와 세자, 공주들은 방계왕족의 파벌에 합류했고 권 공작과 같은 구귀족들도 행보를 같이 했다. 이들이 풍파두르 부인의 파벌을 겨냥한 것은 단순히 왕의 사생활 때문이 아니었다. 왕의 방탕함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당시 사회풍속도에서 보면 지나친 것도 아니었다. 루이 14세 역시 그랬고 대부분의 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귀족들이 루이 15세를 비난한 것은 왕이 정부를 두어서가 아니라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 여성에게 베르사유의 거처를 분배하고 작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궁정귀족들의 비난은 거의 만장일치수준이다.⁵¹⁾ 서민, 간통, 사생아 등 비합법적인 요소들이 집약된 풍파두르 부인의 파벌과는 달리, 합법적 결혼과 정통성, 귀족으로서의 우월감,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던 대귀족들이 왕실직계가족과 방계왕족의 파벌에 속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두 집단을 구분지은 더 깊은 속내는 국가를 상대로 한 대부와 비밀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해온 궁정귀족 및 대신들과 이제 궁정 자본주의의 큰 손으로 새롭게 등장한 파리스 형제들 사이의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2. 파벌 게임

이렇게 해서 1745년 이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적대적인 두 세력이 형성되었다. 왕을 에워싼 파벌 간의 대립은 세자의 결혼과 같은 궁정의 대소사부터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고위 관직자의 선택, 대부의 알선까지 사사건건 개입하고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위 관직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이 벌어졌다. 1745년에 쫓겨난 재무총감 오리는 그러한 파벌 게임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1730년 플뢰리에 의해 재무총감으로 발탁되어 경제 개혁과 재정 안정을 이룩한 오리의 경질을 통해 파리스 형제의 위력과 실체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그와 더불어 루이 14세로부터 귀족 작위를 부여받은 전설적인 궁정 은행가 사뮈엘 베르나르(Samuel Bernard)와 그의 사위인 총괄징세

50) *Mémoires et journal inédit du marquis D'Argenson*, p. 243.

51) B. Hours, *Louis XV et sa cour*, p.3.

청부업자 클로드 뒤팽(Claude Dupin)의 시대도 종말을 고했다. 뿐만 아니라 다르장송은 1747년 루이 15세가 콩티 공의 군지휘권을 박탈해서 경쟁관계에 있던 삭스 원수에게 넘겨준 것도 파리스 형제의 음모로 해석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전쟁의 지속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기”⁵²⁾ 때문이다.

1747년 외무대신직에서 쫓겨난 다르장송 자신도 파벌 게임의 희생자로 자처한다. 실제로 루이 15세 치세에는 루이 14세 시대에 비해 대신들의 축출이 빈번했다. 루이 14세는 54년의 친정 동안 26명의 재무총감과 국무비서를 두었지만 해임은 풍퐁(1679년)과 사미아르(1709년) 둘 뿐이었다. 반면 루이 15세가 친정을 선포한 1743년 이후 31년 동안 대신의 수는 35명이며 그 중 오리, 모르파, 마쇼(Machault), 다르장송 후작, 다르장송 백작(Comte d'Argenson), 슈아젤, 프라슬랭(Praselin) 등이 파벌의 입김에 좌우되어 쫓겨났다. 특히 재무총감은 1745년-1774년간 9명이 바뀌었다.⁵³⁾ 대신의 빈번한 교체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고 역으로 정치위기는 대신들의 경질로 이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748년은 루이 15세 치세의 분수령이다.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에서의 패배와 재정위기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면서 절대군주로서의 왕의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지고 군주권의 토대에 대한 시비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1749년 국왕포고령으로 공표된 1/20세는 오리의 뒤를 이어 새로 재무총감이 된 마쇼가 정치적, 재정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던진 승부수였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혁명적이었다. 첫째, 전시에 부과되던 1/10세가 평시에도 부과되는 1/20세로 대체되었다. 둘째, 그때까지 면세특권을 누려온 교회와 귀족뿐 아니라 삼부회 지방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1/20세는 과세 평등을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될 만하다. 다르장송은 평소 정치개혁을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⁵⁴⁾ 이 세금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는

52) *Mémoires et journal inédit du marquis D'Argenson*, p. 323.

53) Machault(1745-54), Moreau de Sechelle(1754-56), Peyrenc de Moras(1756-57), Boullongne(1757-59), Silhouette(1759), Bertin(1759-63), L'Averdy(1763-68), Maynon d'Invaux(1768-69), Terray(1769-74): Arnauld de Maurepas et Antoine Boulant, *Les ministres et les Ministères du siècle des Lumières(1715-1789), Etude et dictionnaire*(Christian-JAS, 1996), pp. 14-53.

54) 다르장송은 1734년 프랑스 정부에 관한 개혁안을 담은 책을 저술했다. R. L. D'Argenson, *Considération sur le Gouvernement Ancien et Présent de la France*, Amsterdam, 1767(Lulu.com, 2010). 이 책은 1764년 암스테르담에서 출간되었으며 루소는 『사회계

그가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고수하려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동생인 육군대신 다르장송 백작이 마쇼 편에 선 것을 보면 세금 반대가 반드시 계급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애초부터 1/20세를 파벌의 음모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그는 세금안 자체의 개혁성도 창안자인 마쇼의 개혁의지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정가들의 영향력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인지 피해망상 때문인지 그는 대신들을 파리스 형제에게 묶인 하수인들로 간주했을 뿐 그들의 독립성 자체를 의심했다.

1749년에 벌어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1/20세 공표 며칠 전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궁내부 대신 모르파의 추방이다. 이 사건은 궁정과 정부의 상관관계, 그리고 복잡한 파벌 게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흔히 모르파의 추방은 1748년에 비밀리에 전파된 왕과 풍파두르 부인에 대한 비방문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방문을 왕실 직계가족에 가까운 모르파의 소행으로 간주한 풍파두르 부인이 루이 15세를 부추겨 그를 쫓아냈다.⁵⁵⁾ 그러나 다르장송은 이 문제를 1/20세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이 세금안이 고등법원에서 등기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한 풍파두르 부인의 파벌이 대상서와 더불어 고등법원에 영향력을 지닌 모르파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결국 모르파의 추방은 풍파두르 부인의 불평과 음모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재정문제를 둘러싼 알력과 풍파두르 부인 파벌의 집요한 몰밑작업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 이듬해 다게소가 대상서직을 사임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이로써 정부에서 플뢰리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다.

다르장송은 재정개혁의 시도뿐 아니라 그것의 실패 또한 파벌 대립의 구도에서 바라본다. 1751년 루이 15세는 1000만 리브르의 기부금 납부를 조건으로 성직자들을 1/20세에서 면제시키는 칙령을 공표했다. 루이 15세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다르장송은 궁정 내부의 경건파 세력을 지목한다. 1/20세 반대를 위해 성직자들과 예수회가 왕비 주변에 몰려들어 파벌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건파는 누구인가? 다르장송은 다게소의 뒤를 이어 새로이 대상서가 된 라무아농을 경건파로 간주했다. 그러나 경건파는 흰 공작부부처럼 대부분 왕비의 측근 인물들로 그 구성원은 명확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파벌로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

약론」에서 이 책을 극찬했다.

55) *Mémoires du duc de Luynes sur la Cour de Louis XV*, pp. 118-119(B. Hours, *Louis XV et sa cour*, pp. 253-255에서 재인용).

들은 종교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시적으로 왕실직계가 족에 접근한 집단일 뿐이다. 이 모든 변화는 종교심이 깊은 세자(1729-1765)가 1750년 10월부터 공문서참사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다르장송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왕비 주변에 몰려든 경건파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궁정의 세력 판도 변화를 주시했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신들과 궁정귀족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파벌들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그럴 때마다 파벌이 이합집산하며 재구성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렇듯 다르장송은 정치와 행정에 관한 문제를 파벌 게임의 시각에서 해석했다. 1740년대에는 풍파두르 부인의 파벌에 속한 재정가들의 음모가 주를 이루었다면, 1750년대에는 그들에게 반격을 가하기 위해 몽친 경건파의 음모가 빈번히 거론된다. 왕의 충애를 잃고 국사에서 배제된 그가 파벌의 존재와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1745년 이후 궁정에서 왕이 더 이상 권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왕을 에워싼 파벌들은 중요한 결정 사항에서 끊임없이 왕에게 압력을 가했다. 왕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일수록 대신들 사이의 불협화음은 더욱 커졌다. 절대군주로서 루이 15세의 한계는 바로 이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감과 향심이 부족한 왕을 둘러싼 궁정 내부의 분열과 정치 위기는 언제건 대신들을 삼켜버릴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1/20세를 비판하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정치적 저항이 폭발하자 궁정 파벌의 대립은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다르장송이 전하는 세금 반대 움직임은 거의 혁명이 임박한 분위기이다. 특히 교회의 특권을 인정해준 1751년의 칙령이 선포되자 왕과 정부에 대한 고등법원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지고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기고만장해진 고등법원은 철학자들과 더불어 반교권주의와 대신독재저지 투쟁에 앞장섰다. 고등법원의 정치투쟁은 177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긴 싸움이 군주정과 교회, 고등법원 모두를 자멸로 이끌지 당시로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V. 맺음말

루이 15세 시대에 프랑스 군주정은 전문화된 행정조직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정보 수집과 문서화작업을 통해 국가 전체의 자산 규모의 윤곽을 파악하

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은 루이 15세 치세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근대적 프랑스를 지향한 장기적이고 합리적 기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개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위기에 직면한 부르봉 왕조가 모든 사회적 관계망을 총동원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절대주의라는 고유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국가의 기능을 최대한 작동시킴으로써 힘겹게 얻은 성과였다. 물론 18세기의 경제 발전과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가운데 외교, 재정, 통상의 측면에서 이른바 행정군주정의 명칭에 걸맞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제도와 운영상의 변화가 나타났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16세기 후반 종교내전 이후 사적 이해관계와 타협하고 그것을 복종시킴으로써 형성된 독특한 정치사회체제로서의 프랑스 절대군주정의 특성은 17세기의 반란과 전쟁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었으며 18세기에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한마디로 루이 15세의 행정군주정은 정치와 사회의 긴밀한 결합에 기반 한 장기적인 역사의 산물이다. 실제로 프랑스 군주정은 18세기에도 여전히 관직매매와 왜곡된 재정제도, 그리고 후견제라는 절대군주정의 태생적 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정치와 행정의 공적 영역은 개인과 가문의 야망과 이해관계라는 사적 측면과 뒤엉켜 있었다.

절대군주정과 더불어 성장한 궁정은 그러한 온갖 모순이 집약된 공간이었다. 궁정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되지 않았고 궁정인들은 개인과 가문을 위한 사적 이익에 헌신했다. 그들에게 정치란 경력과 일족, 가문, 명예, 품위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부를 얻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영향력에 관련된 것이었다. 정부는 그러한 전통적인 정치 관행이 강하게 유지된 궁정의 영향력에 지배되었다.

이 글은 루이 15세의 군주정을 궁정과 정부를 지배한 권력 엘리트의 미시적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적 역할을 거부하고 사적 세계로 도피했다는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루이 15세는 절대군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행정군주정의 우두머리로서 공식적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공식 만찬, 사냥, 베르사유 밖으로의 끝없는 여행을 통해 적절히 충애를 분배하며 궁정을 지배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전통적인 군주의 이미지와 역할을 고수한 루이 15세로서는 점점 더 복잡해진 정부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역부족이었다. 루이 14세 사후 스스로의 힘을 인식하며 파벌 게임을 벌이던 귀족들을 제압하는 것은 그에게 더욱 더 어려운 과제였다.

행정적 사고와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루이 15세의 행정군주정은 외견상

으로는 화려하고 강해 보였지만 증대되는 재정 압박과 저항 이데올로기의 도전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허약하고 부적절했다. 1740년대 말 여론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고 정부는 개혁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혁의 시도는 번번이 특권층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되었다. 이전 시기의 정치 사회구조와 관행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근본적인 개선은 불가능했으며 오히려 정치적 분열만 가중시켰다. 마침내 군주정은 제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 지배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고등법원은 군주권의 토대 자체를 비판하며 군주정을 공격했다. 이렇듯 군주정이 위로부터 와해되어간 것이 18세기 정치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군주정은 1789년까지 궁정사회의 구조와 절차에 묶여 있었다.

(수원대학교 사학과)

〈투고일자: 2012. 7. 13 심사일자: 2012. 7. 22 게재확정일자: 2012. 8. 3〉

주제어 : 루이 15세(Louis XV), 행정군주정(Administrative Monarchy), 궁정(Court), 대신(Minister), 파벌(Faction)

〈Résumé〉

Louis XV et la monarchie administrative

Young-Lim LEE

Cet article a pour but de comprendre correctement Louis XV qui n'attirait pas l'attention des historiens et était considéré comme la coupable des crises politiques du 18^e siècle, et sa monarchie. Sous le règne de Louis XV, la monarchie française achevait les institutions concrètes et pratiques et le développement gestionnaire, digne du nom de la monarchie administrative. Mais ce n'était pas le fruit définitif du règne de Louis XV, mais la conséquence de l'histoire à long terme, fondée sur l'association étroite de la politique et la société. Ces traits de la monarchie absolue de la France comme son propre régime politico-social formé par trouvant un compromis avec les intérêts privés et les faisant obéissants après la guerre religieuse de la seconde moitié du 16^e siècle étaient plus renforcés en passant par les révoltes et les guerres du 17^e siècle et aussi maintenus en le 18^e siècle. En effet, la monarchie française du 18^e siècle se n'était pas débarrassée des contradictions inhérentes de la monarchie absolue, pour ainsi dire venalité, système financier pervers et patronage même en le 18^e siècle, et le sphère public de la politique et l'administration s'était enchevêtré avec le sphère privé par les ambitions et les intérêts des individuels et familles. Cet article a essayé d'analyser le microsphère des élites du pouvoir qui dominaient la cour et le gouvernement où toutes les contradictions étaient intensifiées.

<Summary>**Louis XV and Administrative Monarchy**

Young-Lim LEE

This article aims at understanding correctly Louis XV who has not attracted the attention from historians and regarded as the culprit of the political crisis of the 18th century, and his monarchy. Under the reign of Louis XV, French monarchy achieved concrete and practical institutions and managerial development, well matched up to the name of the administrative monarchy. But it was not the definitive result of the reign of Louis XV, but the long time historical outcome based on the close connection of politics and society. These traits of French absolute monarchy as its own politico-social regime formed by compromising with private interests and making them obedient after the religious war of the second half of the 16th century were more reinforced by way of the revolts and the wars of the 17th century and also maintained in the 18th century. Actually, French monarchy has not been extricated from inherent contradictions of the absolute monarchy, such as office sale, perverted financial system and patronage even in the 18th century, and public sphere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was entangled complicatedly with private sphere by ambition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the microsphere of the power elites who dominated the court and the government where all kinds of contradictions have been intensified.